SHIN&KIM
법무법인(유) 세종

#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제 도입 및 적극행정 기반 조성 등 노력

2024.10.23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·서비스 심의위원회(이하 '심의위원회')(2019.2.14.부터 2024.10.17.까지 총 37회 개최됨)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*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습니다.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2일에는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되었고(2025.4.23. 시행), 이에 따라 동일·유사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* 규제 샌드박스: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,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(기간, 장소, 규모) 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
- 임시허가: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
-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: 안전성 등 시험·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

## 1. 주요 내용

### ● 신속 처리제 도입 및 적극행정 기반 조성

**1)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마련 (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)**

- 기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'임시허가'를 받았거나 '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'로 지정된 것과 **내용, 방식, 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**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는 **간소화된 절차**를 통해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종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
  -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을 심의위원회 내에 새로 설치되는 전문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변경함으로써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

[주요 변경 내용]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|---|---|
| 검토결과 회신기간 | 30일 | 15일 |
| | | |

| 상정 및 심의·의결 주체 | 심의위원회 | 심의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|
|---|---|---|

**2)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(법 제40조의2) 및 포상 (법 제40조의3)**

- 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,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.
- 이에 더해 적극행정을 통해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### ● 전략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추진

**1) AI 분야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·기획**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.6.28. AI 분야 규제 혁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AI 분야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·기획하는 전략기획형 규제 샌드박스*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
  * 사업자가 신청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 대해서만 검토해 온 방식(bottom-up)을 보완하여 규제 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기획
  ※ (사례) 2023.9.26.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(농식품부-과기정통부), 12.22.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(법무부-과기정통부) 등

## 2. 시사점

- 신산업 규제 혁신의 플랫폼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현재까지 69건의 임시허가 및 177건의 규제특례가 부여 또는 지정되었고, 그 결과 혁신적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들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었습니다.
- 하지만,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절차 진행 및 규제 정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, 금번 동일·유사과제 신속 처리제 도입 및 적극행정 기반 조성 시도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.
-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등 제도 정비가 필수로 요구되므로, 사업자들은 조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

## About Shin & Kim's ICT Group

법무법인(유) 세종은 다양한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이 창출되는 ICT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(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, 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,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)를 보유하고 있으며,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법위반 리스크 및 비즈니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ICT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, 입법컨설팅, 규제 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,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관련구성원


### 강신욱
대표변호사

02-316-4059
sokang@shinkim.com

### 안정호
변호사

02-316-2891
jhahn@shinkim.com

### 장준영
변호사

02-316-4985
jyojang@shinkim.com

### 노진홍
변호사

02-316-1639
jhnoh@shinkim.com

### 오행석
변호사

02-316-1618
hseoh@shinkim.com

### 이지은
선임연구위원

02-316-1720
jeunlee@shinkim.com

### 허민도
변호사

02-316-1987
mdhur@shinkim.com
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